

의안번호	2209434
의 퇴 인	김영배의원
회 답 일	2025.5.9.
추계번호	25D2052

인권정책기본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규정
2	안 제9조(인권정책 추진 성과의 평가)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권정책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여야 하고, 관련 조사·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의무규정/ 재량규정
3	안 제10조(인권상황 백서)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인권상황 백서 발간	의무규정
4	안 제12조(국가인권정책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두고,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국가인권정책실무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5	안 제13조(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기구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20조(인권교육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권교육 매년 실시	의무규정
7	안 제21조(인권교육을 위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권교육 지원	재량규정
8	안 제23조(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재량규정
9	안 제24조(인권의 날)	인권의 날을 지정하고 행사 등 사업 실시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미대상: 법무부는 5년마다 ‘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제1차 2007~2011년, 제2차 2012~2016년, 제3차 2017~2021년, 제4차 2022~2026년)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2	안 제9조(인권정책 추진성과의 평가)	미대상: 현재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두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3	안 제10조(인권상황 백서)	미대상: 현재 법무부는 매년 법무연감을 발간하여 인권상황 및 정책에 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음
4	안 제12조(국가인권정책위원회)	미대상: 현재 법무부 산하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및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를 두고 있음
5	안 제13조(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설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안 제20조(인권교육의 실시)	
7	안 제21조(인권교육을 위한 지원)	
8	안 제23조(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9	안 제24조(인권의 날)	미대상: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인권의 날 행사 예산으로 4,000만원을 편성

2. 상세 사유

- 안 제5조(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9조(인권정책 추진 성과의 평가), 제10조(인권상황 백서 발간), 제12조(국가인권정책위원회), 제24조(인권의 날) 등의 재정수반요인은 현재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기존 예산으로 제정안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범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제1차 2007~2011년, 제2차 2012~2016년, 제3차 2017~2021년, 제4차 2022~2026년)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안 제5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법무부는 매년 법무연감을 발간하여 인권 상황,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음
- 법무부는 대통령훈령 제383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¹⁾에 따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및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예산 기준 인권의 날 행사에 4,000만원을 편성

□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설치(안 제13조)

-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관련 제도를 운영중이고, 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으나 규모 및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20조)

- 현재 법무부는 법무행정·집행 관련 공무원 및 피의자, 수용자, 피해자 등 국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 기준 인권교육(1133-300) 사업에 1억 9,100만원을 편성함
- 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에서 인권교육 실시가 의무화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 제20조제3항에서 인권교육의 내용, 실시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인권교육 실시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1)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정부의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관계 부처간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정부부처간의 인권업무에 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둔다.

제5조(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④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지원 의무화(안 제21조)

- 제정안은 교육기관이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인권교육 수요와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기초지방자치단체 수	조례제정	인권전담자	보호관운영	위원회운영	기본계획
광역시	17개(광역시)	17	15	11	15	14
서울	25	15	9	1	12	10
부산	16	10	0	0	4	5
대구	8	4	0	0	1	1
인천	10	2	1	0	1	1
광주	5	5	3	1	5	5
대전	5	4	0	0	0	1
울산	5	5	0	0	5	5
세종	—	—	—	—	—	—
경기도	31	11	3	2	6	4
강원도	18	4	0	0	0	0
충청북도	11	1	0	0	0	0
충청남도	15	15	2	0	5	3
전라북도	14	3	1	1	1	1
전라남도	22	7	0	0	1	0
경상북도	23	3	0	0	0	0
경상남도	18	6	0	0	0	0
제주특별자치도	—	—	—	—	—	—
소계(기초)	208	89	19	5	41	36
총계(전국)	225	106	34	16	56	50

자료: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9.9. 발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